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5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일시·장소,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응시수수료와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 수수료)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실시기관이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수수료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7.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8.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에 감염확정 판정 또는 격리대상자로 판정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9. 심각한 국가위기 단계로 시험일에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낸 응시수수료 전액

제6조(실무수습)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실무수습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하며, 별표 4의 실무수습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④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수습기관이 작성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⑤ 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에게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사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도사 등록신청서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3. 사무소명 및 소재지

4. 지도사자격증 번호 및 발급일

② 그 밖에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지도사등록번호가 기재된 갱신등록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 절차를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화재·자연재해·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 등이 위기에 처한 경우
2. 공무, 연수, 연구, 기술지도 등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갱신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3. 자격취득 분야 및 자격취득일
4. 지도사 등록일
5. 개업·휴업 상태 및 개업일·휴업일
6. 전문분야·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그 밖에 지도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지도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양성과정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 기관(이하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②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양성과정은 교육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하고, 별표 5의 양성과정 교육기준에 따라 제3조제1항의 1차 시험 과목으로 구성한다.

④ 양성과정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성과정 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⑤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양성과정 교육 결과를 실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①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

로서 15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진단·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학력 및 진단·지도 관련 경력은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문분야와 같은 법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위·학력 및 진단·지도 관련 경력을 말한다.

③ 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학력 및 진단·지도 관련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성과정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속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도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지도법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도법인에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지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지도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도법인에 소속된 지도사의 수에 4백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지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도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

라 한다)의 100분의 5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도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18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과 등록 변경 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3. 법 제34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해산 통보의 접수
4.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정관 변경 신고의 접수
5. 제7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6.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7.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안내
8. 제13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9.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통보의 접수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험 실시기관 및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신청과 등록 변경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
5.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안내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등록 신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공고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지도사자격시험에도 적용한다.

제4조(갱신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양성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의 양성과정수강 자격요건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영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도법인이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도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법 제50조제5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가목 중 “법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개별기준의 일반행위표에서 가란 및 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의 5)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⑦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
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관련)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19. 「소상공인기본법」
20.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건설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5. 「협동조합 기본법」(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변경을 위해 신고·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위해 신고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7.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2. 「소프트웨어 진흥법」(같은 법 제20조제6항 및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3. 「발명진흥법」(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4. 「산업디자인진흥법」(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5. 제1호부터 제34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지도사자격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1. 경영지도사

구 분	시 험 과 목
가. 1차시험	1) 중소기업 관련법령 2) 회계학개론 3) 경영학 4) 기업진단론 5) 조사방법론 6) 영어
나. 2차시험	1) 인적자원관리분야 가) 인사관리 나) 조직행동론 다)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2) 재무관리분야 가) 재무관리 나)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 다) 세법(세무회계 포함) 3) 생산관리분야 가) 생산관리 나) 품질경영 다) 경영과학 4) 마케팅분야 가) 마케팅관리론 나) 시장조사론 다) 소비자행동론

2.기술지도사

구 분	시 험 과 목
가. 1차시험	1) 중소기업 관련법령 2) 산업경영공학 3) 자연과학개론 4) 기업진단론 5) 조사방법론 6) 영어
나. 2차시험	1) 기술혁신관리분야 가) 기술경영학개론 나) 생산계획 다) 재료역학, 일반금속재료, 전기기기, 섬유재료학, 화학공업 양론, 환경공학개론, 유전공학개론 중 택 1 2) 정보기술관리분야 가) 정보통신개론 나) 시스템 응용 다) 소프트웨어공학
※ 지도사자격시험의 2차시험은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3항 관련)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 응시자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IBT: 71 점 이상	—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 상	350점 이 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 상	204점 이 상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 상	375점 이 상
아이엘츠 (IELTS)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Overall Band Score 4.5점 이상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이하 "청각장애 응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기술지도사 실무수습교육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실무수습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1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직업윤리, 데이터분석, 시장동향 등 기초 직무교육: 10퍼센트
 - 나. 경영·기술진단 방법론, 중소기업 관계 법령 등 심화 직무교육: 50퍼센트
 - 다. 기업 현장실습을 통한 경영·기술지도, 상담기법 등 실무수습: 40퍼센트
2.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직업윤리, 데이터분석, 시장동향 등 기초 직무교육: 10퍼센트
 - 나. 경영·기술진단 방법론, 중소기업 관계 법령 등 심화 직무교육: 30퍼센트
 - 다. 기업 현장실습을 통한 경영·기술지도, 상담기법 등 실무수습: 60퍼센트
3. 실무수습을 제외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경영기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양성과정 교육은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교육강사 및 교육수준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강사

- 1) 해당 시험과목 분야 박사학위와 5년 이상 강의경력을 갖춘 대학교수
- 2) 법률해석·회계분석 관련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나. 교육수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영·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의 출제 난이도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전체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양성과정 수료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영·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의 출제 난이도를 반영하되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출제 문제별 난이도를 각각 상·중·하 등급으로 구성하되 상위 난이도를 30퍼센트 이상으로 하위 난이도를 25퍼센트 이하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 과목당 문항은 40문항으로 구성하고, 객관식으로 출제하여야 한다.

다.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3. 양성과정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 또는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법 제4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사용한 경우				
나.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4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21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44조 제1항제3호	100	200	300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 자	법 제44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